

Intro 자주 묻는 질문	2
I. 2023년 연말 주요 개정사항	4
Ⅱ.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	6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	
○ 인적공제	7
○ 연금보험료 · 특별소득 공제	8
○ 특별소득 공제	9
○ 그 밖의 소득 공제	10
IV.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	
○ 세액 감면 및 공제.....	12
○ 특별세액공제	13
○ 기타세액공제	15
V. 추가 제출서류안내	16

자주 묻는 질문

구분	소득·세액공제 대상자의 공제요건					본인 명의만 공제되는 항목
	보험료	의료비	교육비	기부금	신용카드	
생계요건	○	○	○	○	○	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, 주택마련저축, 연금계좌, 월세액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투자조합출자 등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청년형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, 주택자금, 개인연금저축
연령요건	○	X	X	X	X	
소득요건	○	X	○	○	○	

Q_1) 배우자가 23년 퇴직하였는데,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A_1) 23년 1월부터 23년 퇴직 시 까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23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(또한, 배우자가 2015년 퇴직하고 당시 퇴직금(100만원 이상)을 IRP 계좌로 이체, 2023년에 IRP 계좌를 해지하였다면,
2023년에 퇴직소득이 발생된 것이므로 2023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)

연간소득금액 = 종합소득금액 + 퇴직소득금액 + 양도소득금액 ≤ 연 100만원

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신청 가능

Q_2)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구성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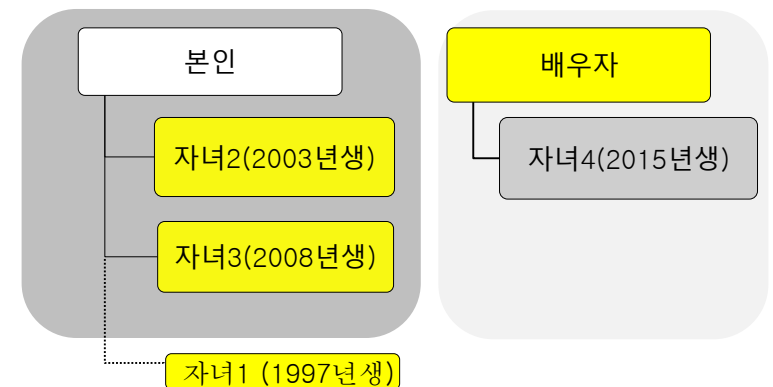
A_2) 의료비는 타인의 기본공제자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
배우자 : 배우자가 근로소득자 이므로 가능

자녀 1 : 어느 누구의 기본공제자가 아니므로 가능

자녀 2, 3 : 본인의 기본공제자 이므로 가능

자녀 4 : 타인(배우자)의 기본공제자 이므로 불가능



자주 묻는 질문

Q_3) 간소화 서비스의 국민,건강 고용 보험료 금액과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이 왜 다른가요?

A_3) 보험료의 경우, 전년도 정산 부분이 당해년도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Q_4) 본인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“부양가족의 정보” 를 넣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_4)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드시 “자료제공동의”를 받으셔야 합니다. (혹은 팩스 신청가능/ 관련문의 126)

www.hometax.go.kr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 > 연말정산간소화 >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

Q_5) 작년과 비교하여 왜 환급세액이 줄었나요?

A_5) 작년과 환급세액금액만을 단순 비교하시면 안됩니다. 당사는 매년초 소득을 예측 후 세율 Simulation한 결과로 당해년도 세율을 계산합니다.

매년말 총소득이 확정되고 인적공제 사항에 따라 확정 세율이 정해지면, 기납부 세금에서 +/- 하여 환급/추징이 됩니다.

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		
구분		근로제공 기간 이 외(입사 전, 퇴사 후) 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여부
연금보험료		O
특별 소득공제	보험료공제(건강, 고용보험료 등)	X
	주택자금 공제	X
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공제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,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	O
	주택마련저축공제	X
	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	X
	우리사주조합출연금,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X
	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O

I .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	2022년	2023년
연금보험료공제	·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(22.6.30일까지 하한액 33만원, 상한액 524만원)	·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(23.6.30일까지 하한액 35만원, 상한액 553만원)
보험료	· 건강보험요율 : 보수월액의 6.99% · 고용보험요율 : 보수총액의 1.8%(실업급여기준)	· 건강보험요율 : 보수월액의 7.09% · 고용보험요율 : 보수총액의 1.8%(실업급여기준)
주택자금 (주택마련 저축 포함)	·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- 무주택 세대주 -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-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공제가능 - 거주자간 차입 기준이자율: 1.2%	·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- 무주택 세대주 -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-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공제가능 - 거주자간 차입 기준이자율: 2.9%
신용카드 공제	· 공제율(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며,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의 번호의 역순부터 적용한다.) ① 전통시장 사용분 : 40% ② 대중교통 사용분 - 1~6월 : 40%, 7~12월 :80% ③ 도서, 신문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사용액 : 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) ④ 현금영수증 사용액 : 30% ⑤ 직불카드 등 사용액 : 30%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 : 15%	· 공제율(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며,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의 번호의 역순부터 적용한다.) ① 대중교통 사용액: 80% ② 전통시장 사용액('23년 4~12월): 50% ③ 전통시장 사용액('23년 1~3월): 40% ④ 도서공연 등 사용액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& '23년4~12 월 사용분): 40% ⑤ 도서공연 등 사용액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& '23년1~3 월 사용분): 30% ⑥ 현금영수증 사용액 : 30% ⑦ 직불카드 등 사용액 : 30% ⑧ 신용카드 등 사용액 : 15%
	※ 공제액 계산 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: 초과사용금액 x 공제율 + 전년대비 5% 증가한 사용금액 *20%+ 전년대비 5%이상 증가한 전통시장소비분 *20% · 기본한도 (급여수준별 차등적용) -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: Min[총급여액x20%, 300만원] 총급여액 7천만원 ~ 1.2억이하 : 250만원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 : 200만원 -> 국세청 간소화 및 Yeta시스템 자동 반영	※ 공제액 계산 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: 초과사용금액 x 공제율 · 기본한도 (급여수준별 차등적용) ① 기본한도(급여수준별 차등적용) 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300만원 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: 250만원 ② 추가한도 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: 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공제액+ 대중교통공 제액+도서공연등 공제액, 300만원] 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공제액+ 대중교통공 제액, 200만원] -> 국세청 간소화 및 Yeta시스템 자동 반영

I .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구분	2022년	2023년
기부금	신설	-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: 15%
월세액 세액공제	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, 오피스텔(준주택) 또는 고시원같은 다중생활시설(준주택)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*에 따라 세액공제 * 공제율 -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 - 총급여 7천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: 15%	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, 오피스텔(준주택) 또는 고시원같은 다중생활시설(준주택)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*에 따라 세액공제 * 공제율 -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 - 총급여 7천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: 15%

II.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

총 급여액		(연간급여액 + 급여외소득 - 비과세소득)
(-) 근로소득공제		
근로소득금액		
(-) 인적 공제		기본공제, 추가공제 (경로우대, 장애인, 부녀자, 한 부모 가족공제)
(-) 연금보험료 공제		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 연금 • 우체국연금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
(-) 특별 소득 공제		보험료(건강 • 노인장기요양 • 고용보험료) 근로자부담분 주택자금공제 (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차입금, 장기주택저당차입금) 이월 기부금 ('13년 이전 지출분)
(-) 그 밖의 소득공제		개인연금저축공제, 소기업•소상공인 공제부금,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,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
(+)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		
근로소득 과세표준		
(x) 기본세율		
산출세액		
(-) 세액 감면		중소기업취업자
(-) 세액 공제		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, 표준세액공제 월세액
결정세액		
(-) 기 납부세액		매월 간이 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액
납부 또는 환급세액		
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

인적 공제

항목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			
기본공제	•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						
	공제대상자		공제금액	기본공제요건			
				생계요건	연령요건		소득금액요건
	근로자본인		1명당 : 150만원	-	-		-
	배우자			-	-		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)
	기타 부양 가족	직계비속 입양자		-	만 20세 이하 (2003.01.01 이후 출생)	장애인은 연령요건 불문	
		직계존속		주민 등록 등본상의 동거 주1	만 60세 이상 (1963.12.31 이전 출생)		
		형제자매			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		
		기초 수급자			-		
	위탁아동					만 20세 이하 (2003.01.01 이후 출생)	
주1 학업 • 취업 • 요양 등의 일시 퇴거 또는 직계 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							
추가공제	•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						
	추가공제	공제금액	공제요건				
	경로우대	1명당 100만원	만 70세 이상(1953.12.31 이전 출생) 이상				
	장애인	1명당 200만원	장애인, 상이자,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주1 (나이제한 없음)				
	부녀자	연 50만원	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• 배우자 (소득 유• 무 불문)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•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				
	한 부모가족 주2	연 100만원	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				
	주1 암, 중풍, 백혈병,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2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 받을수 없음 (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가족공제를 적용)						
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

연금보험료 • 특별소득 공제

항목	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		
연금보험료 공제		•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 공제한 연금 보험료의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• 올해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(前) 회사에서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“종(전) 근무지의 연금보험료”란 에 기재할 것					
		구분		공제금액	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주1		
		국민연금보험료		전액			
		공무원연금보험료 등		전액			
		주1 2023.01.01 ~ 2023.12.31 일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 (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능)					
보험료 공제		• 올해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(前) 회사에서 납부한 건강• 노인장기요양• 고용보험료는 “종(전) 근무지”란 에 기재할 것					
		구분		공제금액	공제 대상		
		건강 노인장기 고용보험료		전액	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		
주택 자금 공제	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	구분		대출기관 차입		거주자간 차입	
		공제대상자		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(원 주1)인 근로자(외국인 포함)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 ③ 총 급여액,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: 제한 없음		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(원 주1)인 근로자(외국인 포함)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 ③ 총 급여액 : 5천만원 이하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: 제한 없음	
		공 제 요 건	2007.12.31 이전 차입	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할것		공제 불가	
			2008.01.01 이후 차입	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·전입일주2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것 ③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		공제 불가	
			2010.01.01 이후차입			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·전입일주2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할 것 ③ 연 이자율 2.9%주3 이상의 차입금일 것	
		공제 금액		원리금 상환액의 40%			
		공제 한도		연 400만원			
		주1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것이 없어야 함 주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전입일로 봄 주3 2023.03.20 이후 주택임차차입금율					
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

특별소득 공제

항목	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
주택 자금 공제	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	•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 원 (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) 인 경우,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 공제 적용			
		구분		2013년 이전 차입금 차입금	2014년 이후 차입한 차입금
		공 제 요 건	주택	•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 •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• 연말 현재 1주택 ,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	•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 •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(20년 이후 차입분 5억원 이하) •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
			차입금	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• 소유권(또는 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•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	
		• 공제한도			
		구분		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	공제한도
		2015.01.01 이후 차입한 차입금	15년 이상	고정금리 & 비거치식 분할 상환	연 1,800만원
				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	연 1,500만원
				기타대출	연 500만원
			10년 이상	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	연 300만원
		2012.01.01 이후 차입한 차입금		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	연 1,500만원
		2011.12.31 이전 차입한 차입금	10년 이상 15년 미만('03.12.31 이전 차입금)		연 600만원
			15년 이상 30년 미만		연 1,000만원
30년 이상			연 1,500만원		
•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주택분양권, 주택 입주권)로서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“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”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					
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

그 밖의 소득 공제

항목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
개인연금저축공제	• 2000.12.31 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, 납입금액의 40% (연 72만원 한도) 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			
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 부금	• 노란 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			
주택마련저축공제	•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액 (연 240만원한도) 의 40% 를 소득공제			
	주택마련저축	가입시기	세대주, 소유 주택수 요건 납입한도	공제금액
	청약저축(연 240만원 한도) 주택청약종합저축(연 240만원 한도) 근로자주택마련저축 ^주 (월 15만원 한 도)	2005.12.31 이전가입	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수 요건 :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요건 : 없음 ⑤ 총 급여액 요건 : 7천만원 이하	납입금액의 40% (연 400만원 한도)
		2006.01.01 이 후 가입	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수 요건 :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요건 :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총 급여액 요건 : 7천만원 이하	
		2010.01.01 이전 가입	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수 요건 : 연중 무주택 ③ 총 급여액 요건 : 7천만원 이하	
	주 ‘04.2.29까지 가입한 「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(7천만원 이하)을 고려하지 않음			
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

그 밖의 소득 공제

항목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
투자조합출자 등 공제	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공제율(30%~100%) 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			
	공제 대상자	공제요건	공제금액	제출서류
	근로자 본인	① 출자 등 대상기관 벤처투자조합 등, 벤처기업투자신탁, 벤처기업 도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간접투자(개인투자조합) · 직접투자, 창업 ·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,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기업의 지분증권 ② 출자 등 방법 설립 시 출자, 유상증자 참여 등 실질적인 투자에 한함	Min(①,②) ① 출자 등 금액 X10%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·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: 100% 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: 70% 5천만원 초과: 30% ② 근로소득금액 X 50%	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(원천징수의무자 발급), 출자 투자확인서(투자조합관리자 등 발급)
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	공제 대상자	공제요건	공제금액	제출서류
	근로자 본인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.12.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	Min(①,②) ① 납입액X40% ② 연240만원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

Ⅲ. 연말정산 공제 안내

그 밖의 소득 공제

항목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	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	• 근로자 본인 및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%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				
	구분	공제금액		공제한도	
	기본 한도	•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= ㉠ + ㉡ + ㉢ + ㉣ + ㉤ (단, ㉠ + ㉡ + ㉢ + ㉣ + ㉤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야 함)			
추가 한도			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사용분x 공제율+대중교통이용분x 공제율, 300만원] 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사용분x 공제율+대중교통이용분x 공제율, 200만원]		
우리사주조합출연금	•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(연 400만원 한도)				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	•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임금 삭감액의 50% 공제 (연 1,000만원 한도) - 소득공제금액 = (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-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) x 50% ※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말함				

IV.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

세액 감면 및 공제

	항목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
세 액 감 면	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	•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근로소득세의 50% 세액감면 적용			
	중소기업 취업 자 세액감면	•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(34세이하) , 만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액을 감면(23.12.31까지 취업자)			
		구분	2014.01.01~2015.12.31 취업자	2016.01.01 ~ 2018.12.31 취업 자	2018.01.01 이후 취업자
	감면율	50% (2013.12.31 이전 취업자 중 중소기업 재취업자 의 경우 포함)	70% (한도 150만원)	70% 또는 90% (한도 150만원) * 2018년 기준 중소기업취업이 5년 미만인 경 우 90% 감면율	
	조세조약에 따 른 교직원 세액 감면	•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(초•중•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) 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% 면세			
세 액 공 제	자녀세액공제	• 근로자 본인의 자녀(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) 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			
		구분	세액공제액		
		공제대상자녀 (만 8세이상)	• 자녀가 2명 이하 : 1명당 15만원	• 자녀가 3명 이상 : 30만원 + (자녀 수 – 2명) x 30만원	
		출산 • 입양자녀	• 출산 •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, 둘째인 경우 50만원,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		
	연금계좌 세액공제 (퇴직연금 및 연금저축)	•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% (총 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 15%)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			
		총급여	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(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		공제율
		5.5천만원 이하	600만원(900만원)+min(ISA납입액*10%, 300만원) 주		15%
		5.5천만원 초과			12%
주 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(개인종합자산관리) 납입금액의 10% 한도 추가(최대 300만원)					

IV.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

특별세액공제

항목	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
세 액 공 제	보 험 료	•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	
		공제요건	
		보장 성 보험료 주 ¹	•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
		장애인전용보험료 주 ²	•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
		납입액(연 100만원 한도) 의 12%	
	납입액(연 100만원 한도) 의 15%		
	주 ¹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“보험료공제대상” 으로 표시된 보험 (종신보험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 등)		
	주 ²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“장애인전용보험” 으로 표시된 보험		
	의 료 비	•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 불문)에게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% 를 초과하는 의료비 에 대해서만 공제적용	
		•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는 2월초에 차감반영됩니다.(최종확정시에 확인 가능합니다.)	
공제대상자		의료비 지출액	적용대상금액
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 (연령 · 소득불문)		기본의료비: 본인 · 65세이상 ^{주1} , 장애인, 건강보험산정특례자 ^{주2} 에 대한 의료비	기본의료비 전액 (①)
		추가의료비 : 상기 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	Min(㉠ ,㉡) (②) ㉠ 추가 의료비 – (총급여액x3%) ㉡ 연 700만원
		미숙아 · 선천성이상아 의료비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	미숙아 ·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전액 (③)
		난임시술비: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	난임시술 의료비 전액 (④)
	의료비 세액공제액: (①+②)x15%+③x20%+④x30% 의료비 추가공제 적용대상금액 ②이 (-)금액인 경우에도 의료비 기본공제금액 ①과 그대로 합산 (①과 ②의 공제금액을 먼저 합산하고, 그 합산한 금액이 (-)금액인 경우 ③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며, ①과 ②,③의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(-)금액인 경우 ④에서 그 금액을 차감)		
주 ¹ 만 65세 이상(1958.12.31 이전 출생)			
주 ²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 · 재등록된 자			

IV.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

특별세액공제

항목	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				
세 액 공 제	특 별 세 액 공 제	교 육 비	• 근로자 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(직계존속·수급자 제외) 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◦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회사 지원에 대한 비용은 차감 반영됨				
			공제대상자		공제대상 교육비	공제한도	세액공제액
			일 반 교 육 비	취학 전 아동	•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또는 체육시설(주 1회 이상 실시과정)	1명당 3백만원	교육비 공제대상금액 X 15%
				초,중,고등학교	• 초,중,고등학생 등록금, 입학금, 급식비, 교과서대금, 방과 후 학교 수업료 • 중고생 교복, 체육복 구입비 (1명당 50만원 한도) • 체험학습비(1명당 30만원) • <u>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(23.1.1 이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)</u>		
				대학교	• 원격대학,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및 대학생의 등록금, 입학금 등	1명당 9백만원	
				근로자본인	• 국외교육기관, 대학원, 시간제과정,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^주	전액공제	
			장애인특수교육비 (직계존속·수급자 가능)		•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재활교육기관		
			주)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(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)				
			• 국외교육비의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				
			근로자	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			
국외근무자	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(연령요건 불문)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 및 위탁아동						
국내근무자	유학중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, 초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(고등학생,대학생은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능) -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-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,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부양의무자(부모·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자가)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						

IV.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

기타세액공제

항목		항목 별 공제요건 요약설명	
세 액 공 제	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	1995.11.01 ~1997.12.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%를 세액공제	
	외국납부 세액공제	- 해외 파견 등으로 파견국가에 납부한 세액(외국납부세액) ^{주1}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^{주1}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-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= 산출세액 x (국외원천소득/근로소득금액)	
	월세세액공제	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원)으로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세입자	
		공제요건	세액공제액
		근로자(세대주, 세대원) 본인이 임대차 계약자이고, 계약서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일치	총급여 5,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 , 112만5천원 한도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는 17% , 연 127만5천원 한도

V. 추가 제출서류안내

항목	제출서류		발급기관	국세청 간소화서비스
본인	중도입사자	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원천징수부	전 근무지	
	외국인근로자	외국인 등록사실 증명	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,군,구청	
인적공제	공통서류	주민 등록 표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원	정부24(http://www.gov.kr/)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주민센터	
	일시 퇴거자	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	본인이 직접 작성	
		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 지의 주민 등록 표 등본	정부24(http://www.gov.kr/) 또는 주민센터	
		재학,요양,재직증명서	관련기관	
	입양 자	입양증명서, 입양 관계 증명 원 (주민 등록 표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)	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주민센터	
	위탁아동	가정위탁보호확인서	시,군 구청 아동 복지 과	
	장애인	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(수첩, 복지카드)	정부24(http://www.gov.kr/) 또는 주민센터	
		국가 유공자등 법률에 의한 상이 자	상이증명서	국가보훈처
		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	장애인증명서	해당 의료기관

V. 추가 제출서류안내

항목			제출서류	발급기관	국세청 간소화서비스
주택 임 차 입 금 주택 자 금 공 제	공통서류		주민 등록 표 등본	정부24(http://www.gov.kr/) 또는 주민센터	
	주 택 임 차 입 금	금융기관	주택자금상환증명서	해당 금융기관	○
		개인간 (거주자간)	월세 액,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	본인이 직접 작성	
			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 증 등 상환 증명서류	근로자본인	
			연장(갱신) 또는 이사의 경우	연장(갱신) 또는 이사 전 임대차 계약서	근로자본인
	장기주택저당차입금		주택자금상환증명서		해당금융기관
		건물 등기부 등본		대법원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	
		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		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http://www.realtyprice.kr) 또는 시,군,구청	
		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 (대환 또는 연장 시)		해당 금융기관	
		분양권계약서 사본(분양권에 한함)		분양회사	
	개인연금저축		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	해당금융기관	○
	소기업, 중소기업 공제부금		공제부금납입증명서	중소기업중앙회	○
	투자조합출자		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, 투자확인서	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(벤처기업 투자 등은 중소기업청)	
주택마련저축	주민 등록표 등본		정부24(http://www.gov.kr/) 또는 주민센터		
	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		해당 금융기관	○	

V. 추가 제출서류안내

항목	제출서류		발급기관	국세청 간소화서비스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	신용카드,체크카드	사용금액확인서	해당금융기관	○
	현금영수증	연간사용금액확인	국세청 현금영수증	○
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	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		우리사주조합	
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	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증명서		금융기관	○
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증명서		금융기관	○
연금계좌 세액공제	퇴직연금	납입증명서	금융기관	○
	연금저축	납입증명서		
보험료 세액공제	보장 성 보험	납입증명서	금융기관	○
	장애인 전용	납입증명서		
의료비 세액공제	병원,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	영수증	해당 의료기관	○
	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	명세서, 납부확인서	해당 의료기관	
	보청기, 장애인보장구 구입비	영수증	판매자	
	의료용구 구입, 임차비용	의료비 영수증	해당 의료기관 및 판매자	
	안경,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	영수증	안경점	
	실손의료보험금	수령액확인	국세청	○
교육비 세액공제	국내교육비	교육비납입증명서	해당 교육기관	○
		교복구입비	해당 판매점	
		학원비	해당 학원	
	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	교육비납입증명서	해당 특수교육기관	
		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		
	국외교육비	교육비납입영수증	해당 교육기관	
		국외유학인정서	국제교육원 등	
		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	재외공간	

V. 추가 제출서류안내

항목	제출서류		발급기관	국세청 간소화서비스
기부금공제	정치자금	정치자금 후원 등	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정당	
	특별재난지역 자원 봉사용역	기부금확인서	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 봉사 센터 장	○
	이외 기부금	기부금영수증	해당 기부단체(또는 종교단체) www.mcst.go.kr 적격종교단체 확인	
		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		
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	미분양주택확인서		시,군,구 또는 분양회사	
	차입금이자상환액 증명서		해당 금융기관	○
	매매계약서 사본		근로자 본인	
	건물등기부등본		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http://www.iros.go.kr)	
	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		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http://www.realtyprice.kr)	
월세 세액공제	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 증 등 증명서류		근로자 본인	